

학교법인 순천성심학원

2023(학)년도 2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7 인	2 인
재적임원	7 인	2 인
참석임원	5 인	0 인

1. 일시 : 2023년 9월 1일 19:00~20:00(회의소집 통보일 : 2023년 8월 21일)

2. 장소 : 바오바오(서울)

3. 임원 출·결사항

○ 참석 임원

- 이사(5인) : 성규제, 김경희, 조항노, 김준태, 김 영

- 감사(0인) :

○ 결석 임원

- 이사(2인) : 신동만, 이영재

- 감사(2인) : 김주일, 문영찬

4. 안건

가. 법인 이사 선임 심의

나. 법인 이사장 선임 심의

다. 순천제일대학교 규정 개정 심의

라. 순천제일대학교 차량운반구 용도 폐기 및 매입 심의

마. 기부금 수입 심의

5. 회의 내용

의 장 : 학교법인 순천성심학원 정관 제28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이사 7명중 5명이 참석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이사회 개최가 상원이 되었기에 2023학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를 선언한다.
(다음으로 전 회의록을 낭독한 후 이상 여부와 제출된 회순 및 안건채택에 대하여 의견을 묻다.)

김준태 이사 : 전 회의록 내용, 회순 및 안건채택을 받기로 동의하다.

김경희 이사 : 재청하다

의 장 : 전 회의록 내용, 회순 및 안건채택에 동의 및 재청에 대하여 가부를 묻다. 참석이사 전원 "가"로 찬성하여 확정되었음을 선포하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2023-2차 이사회 안건 처리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의를 진행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성규제	이 사	김경희	이 사	김준태	이 사	김영
이 사	조항노	이 사		감 사		감 사	

가. 법인 이사 선임 심의

의 장 : 첫 번째 안건으로 학교법인 순천성심학원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에 의하여 임기 만료 예정인 본인의 이사 선임(연임)안을 상정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본인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인 정관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제일 연장자이신 김경희 이사님께 진행을 맡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고 회의실 밖으로 잠시 퇴실하다.

■ 임기 만료 이사 현황

직위	성명	현 임기	비고
이사	성규제	2018.10.28.~2023.10.27	교육이사

김경희 이사 : 본 안건 심의를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진행한다. 현재 본 법인의 이사 겸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성규제 이사(이사장)의 임기 만료가 도래되어 오늘 이사 선임(연임)안을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하여 설명하다. 현 이사(이사장)께서는 우리 법인과 대학의 미래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그 결과 대학의 각종 국고사업 선정 등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힘들어지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학과 빠르게 소통하며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이사 선임(연임) 제청안에 심의를 요청하다.

김 영 이사 : 본 안건에 대하여 김경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성규제 이사(이사장)께서 재임기간 동안 법인과 대학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것은 임원 분들께서도 모두 잘 아시리라 사료되어 향후 우리 법인과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더 노력하실 수 있도록 이사 선임(연임)안에 동의하다

조항노 이사 : 김 영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김경희 이사 : 본 안건에 대하여 참석한 이사님들께 심의를 요청한 바 김 영 이사의 동의와 조항노 이사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로 의결을 요청하자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임시의장 1명 및 참석이사 3명)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심의 확정되었음을 선언한 후 퇴실하셨던 성규제 이사(이사장)를 입실하도록 하다.(성규제 이사(이사장) 입실하다.)

■ 법인 이사 선임(연임) 확정자 명부

직위	성명	현직	신 임기	비고
이사	성규제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2023.10.28.~2028.10.27	교육이사

김경희 이사 : 의장께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법인 이사로 선임(연임) 처리되었음을 설명하고 진행을 의장께 넘기다.

의 장 : 법인 이사님들께 본인의 이사직 선임(연임)을 승인하여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우리 법인과 대학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다.

나. 법인 이사장 선임 심의

의 장 : 두 번째 안건으로 법인 정관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등)에 의거 차기 법인 이사장 선임(안)을 제청하다. 반급 전 신이한 첫 번째 안건과 관련하여 본인의 이사장직 인기가 2023년 10월 27일까지 만료되어 차기 2023년 10월 28일부터 새롭게 법인의 대표직을 수행할 이사장을 정관에 의거 호선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성규제	이사	김영	이사	조항노	이사	김영희
이사	조항노	이사		감사		감사	

김 영 이사 : 첫 번째 안건 심의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본 법인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성규 제 이사께서 법인을 대표해서 이사장직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이사장으로 추천하다.

김준태 이사 : 김 영 이사의 추천에 동의하다.

김경희 이사 : 재청하다.

의 장 : 본 안건에 대하여 김 영 이사의 추천과 김준태 이사의 동의, 김경희 이사의 재청을 하였 으며 다른 의견이 있는 지 묻다.(다른의견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로 의결을 요청하자 참석이 사 전원이 찬성하다.(의장 1명, 참석이사 4명)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확 정되었음을 선언하다. 본인을 이사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고 찬성하여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사장직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다.

다. 순천제일대학교 규정 개정 심의

의 장 : 세 번째 안건으로 순천제일대학교 규정 개정 심의 안건을 상정하다. 금번 대학 규정 개정 심의 내용 2022-5차 이사회에 개정된 정관과 정부 국고지원사업 등과 관련되어 대학의 직제규정과 교직원 연봉제 규정,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 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검토하신 후 동의 및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이사 : 대학에서 요청한 직제규정 및 교직원 연봉제 규정,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동의하다.

김 영 이사 : 재청하다.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준태 이사의 동의와 김 영 이사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자 참석이사 전원(의장 1명, 이사 4명)이 찬성하 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였음을 확인하고 대학규정 개정 심의에 대하여 확정·통과되었음을 선언 하다.

■ 『직제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교직원) 본 대학의 교직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교 원 1.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하되, 정관 제39조의 2 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u>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 면한다.</u> 2. 겸임교원·초빙교원은 <u>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 하되</u>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 강사는 <u>총장이 임용</u> 하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교직원) 본 대학의 교직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교 원 1.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하되, 정관 제39조의 2 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u>총장이 임용한다.</u> 2. 겸임교원·초빙교원은 <u>총장이 임용</u> 하되 필요한 사항은 따 로 정한다. 3. 현행과 같음
제11조(계열 및 학과) ① 각 계열에는 계열부장, 각 학과에는 학과장을 둔다. ② 계열부장은 해당 계열을 통괄하고, 학과장은 학과 운영을 통괄하면서 계열부장을 지원한다. ③ 각 계열 및 학과에서는 일반 행정부서에서 요청하는 업무 를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계열 및 학과) ① 각 계열에는 계열부장을 둘 수 있으 며, 각 학과에는 학과장을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부설기관) 본 대학에 다음의 부설기관을 둔다. ② 대학일자리센터 1. 시·역청년 고용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새학생의 취·창업시 원과 진로지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부설기관) 본 대학에 다음의 부설기관을 둔다. ② <u>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u> 1. 시·역청년 고용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새학생의 취·창업시 원과 진로지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간서명란]

이사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현행	개정(안)
<p>㉓ 교육혁신원</p> <p>1. 교육혁신원은 대학 교육의 지속적인 질 제고 등을 위하여 운영한다.</p> <p>2. 교육혁신원에 교수학습정보지원센터, 교육과정지원센터, 교양교육인성센터, 교육성과관리센터를 둔다.</p> <p>3. 교육혁신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p><별표 1> 조직도</p>	<p>㉓ 교육혁신원</p> <p>1. 교육혁신원은 대학 교육의 지속적인 질 제고 등을 위하여 운영한다.</p> <p>2. 교육혁신원에 교수학습정보지원센터, 교육과정지원센터, 교양교육인성센터, 교육성과관리센터를 둔다.</p> <p>3. 교육혁신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p><별표 1> 조직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소재화공과 신설 반영 ○ 학과명칭변경(산업융합전자과, 산업안전보건과) ○ 경영회계과 삭제 ○ 센터명칭변경(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교직원 연봉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연봉채정권자) 교직원의 연봉은 계약당사자인 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총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보수체계) ① 연봉적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매년 계약하는 계약연봉을 기준으로 하며, 제10조에 의한 성과급을 포함 한다.</p> <p>② 계약연봉과는 별도로 보직자에게는 직책(보직)수당 등을 총장이 지급할 수 있다.</p> <p>③ 직원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연월차수당, 법정수당을 총장이 별도로 지급한다.</p> <p>④ 계약연봉 금액중 기본급(계약연봉 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연봉조정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⑤ 계약연봉과는 별도로 특별상여금, 병설 명내, 유가비, 교직원자녀 학비보조금, 자가운전보조비, 퇴직위로금, 특별공로금, 연장근로수당, 장기근속표창, 입시업무 수당 및 입시업무 성과급, 학회지원금, 성과수당, 복리후생비보조, 박사학위축하금, 취업홍보 수당 및 성과급, 정책개발참여수당, 기타 필요한 명목의 수당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지급할 수 있다.</p> <p>1. 퇴직위로금과 특별공로금은 6개월분의 계약연봉월액(성과연봉제외)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도, 근속년수 등을 고려하여 내무지침에 의거 총장이 지급할 수 있다.</p> <p>2. 입학관리처는 매년 입시상황에 맞춰 입시홍보수당 지급 지침 및 입시홍보 활동의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대한 지침을 기안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 지급한다.</p> <p>3. 취·창업지원처는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2개년간의 대학 및 학과별 취업결과에 따라 교수 취업인센티브 산정 기준(취업지수)에 근거한 취업홍보 수당 및 성과급 지급 지침을 기안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 지급한다.</p> <p>제9조(계약연봉) ④ 계약연봉의리 함은 연봉의 구성요소로서 기본급, 연구보조비(행정보조비), 급량비, 제수당의 합으로 연봉적용 대상자의 각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적인 연봉계약금액을 말하며 차기연도 연봉채정의 기준이 된다.</p> <p>② 신규임용자는 매년 정하는 내부 기본원칙에 따라 학력, 경력,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계약연봉을 책정한다.</p> <p>제15조(연봉채정원칙) 매년 연봉채정은 전년도 계약연봉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능력, 예산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후 교직원의 전년도 1년간 업적평가 등을 반영, 개인별로 책정(조정)한다.</p>	<p>제6조(연봉채정권자) 교직원의 연봉은 계약당사자인 학교법인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총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보수체계)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p>⑤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제9조(계약연봉) ④ 계약연봉은 당해연도 지급하는 보수로서, 기본연봉(연봉월액, 연구보조비, 행정보조비, 정액급식비 포함) 이외에 성과급을 포함할 수 있으며,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연봉은 차기연도 연봉채정의 기준이 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연봉채정원칙) 매년 연봉채정은 전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능력, 예산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후 교직원의 전년도 1년간 업적평가 등을 반영, 개인별로 책정(조정)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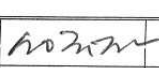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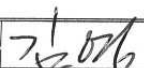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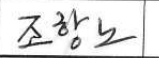
[간서명란]							
이사장	이소리	이 사	김애	이 사	김문영	이 사	김문영
이 사	김문영	이 사	조항노	감 사		감 사	

■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신규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설치) 본 법인의 교원 및 직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법인에 따로 둔다.	제3조(설치) 본 대학의 교원 징계위원회는 학교에 두며, 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둔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교원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교원 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2.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본 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본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직원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직원 징계 위원회는 5인 이상 7인(위원장 1인을 포함한다) 이내로 구성한다. 2. 직원 징계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또는 본 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교직원의 위원의 수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교원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교원 징계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단, 교수노조조합원의 징계의 경우에는 11인의 위원으로 조직할 수 있다. 2.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구성은 <u>사립학교법 제62조</u> 를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6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교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때 2. 교직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정당한 사유가 없이 결근이 3일 이상 계속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본 대학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6. 교직원 해oyer행에 관한 규정이 정한 의무 재직 기간을 위반한 때 ②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③ "파면"은 징계 의결을 거쳐 교직원의 신분을 해면시키며, 연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해임"은 심계 의결을 거쳐 교직원의 신분을 면하여 면금은 지급한다. 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다만, 재직 중 3회의 정직 처분을 받을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⑥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다만, 2회의 감봉처분을 받을 때에는 1호봉을 감한다.	제6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u>학교의 장(교원 징계사건) 또는 이사장(직원 징계사건)</u> 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서면으로 적성케 한다. 다만, 3회의 견책 처분을 받은 때에는 1회의 정기 승급에서 제외한다. ⑧ 전항의 보수에서 각종 수당에 관한 사항은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⑨ "중징계"라 함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제7조(징계 의결의 요구) ① 이사장은 그 소속 교직원 중에서 제6조 제1항 각호 1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이하 "징계의결요구서"라 한다)에 의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확인서(별지 제1호의 2서식)에	제7조(징계 의결의 요구) ① <u>학교의 장(교원 징계사건) 또는 이사장(직원 징계사건)</u> 은 그 소속 교직원 중에서 제6조 제1항 각호 1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이하 "징계의결 요구서"라 한다)에 의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

[간서명란]							
이사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감 사	감 사	감 사

현행	개정(안)
<p>내용을 기재하여 요구하여야 한다.</p> <p>②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제6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 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충분히 조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징계 요구서(이하 "징계 요구서"라 한다)에 의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이사장에게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 요구를 받은 이사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하여야 한다.</p> <p>④ 이사장은 징계의결을 요구 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p>	<p>요구시에는 확인서(별지 제1호의 2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요구하여야 한다.</p> <p>② 본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제6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 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충분히 조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징계 요구서(이하 "징계 요구서"라 한다)에 의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교원은 교원 징계위원회에, 직원은 이사장에게 징계 요구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 요구를 받은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이사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의 장 또는 이사장은 징계의결을 요구 할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징계 의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 하여야 한다.</p>
<p>제13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 대상자는 징계 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은 최초 출석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기피 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사유가 명확한 근거에 의하지 않고 징계의결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거나 남용적인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상계위원을 포함하여 징계 위원회가 다수결로 기피신청을 기각·각하 한다.</p> <p>③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 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수의 수가 3분의 2이상일 수 있도록 이사장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p>	<p>제13조(위원의 기피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 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수의 수가 3분의 2이상일 수 있도록 교원 징계사건은 학교의 장에게, 직원 징계 사건은 이사장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 하여야 한다.</p>
<p>제14조(징계 의결) ① 교원 징계 의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p> <p>② 직원의 징계 의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p> <p>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별지 제4호 서식 징계 의결서(이하 "징계 의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p> <p>④ 이사장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p> <p>⑤ 이사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 처분 결정서(이하 "징계 처분 결정서")를 당해 교직원에게 교부 하여야 하며 소속 학교의 장에게도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통고하여야 한다.</p> <p>⑥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p>	<p>제14조(징계 의결)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별지 제4호 서식 징계 의결서(이하 "징계 의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의 장 또는 이사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p> <p>⑤ 학교의 장 또는 이사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 처분 결정서(이하 "징계 처분 결정서")를 당해 교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원 징계의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도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통고하여야 한다.</p> <p>⑥ 현행과 같음</p>
<p>제1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p> <p>② 간사의 서기는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p>	<p>제1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의 서기는 직인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며, 직원징계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p>

이사장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감사		감사	

라. 순천제일대학교 차량운반구 용도 폐기 및 매입 심의

의 장 : 네 번째 안건으로 순천제일대학교 업무용 차량운반구 용도 폐기 심의를 요청하다. 용도 폐기 대상 차량운반구는 각각 2005년, 2011년에 구입하여 대학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운행불가 판정과 차량노후로 인하여 용도폐기 및 신규 매입 심의를 대학에서 이사회로 제청하였음을 설명하다.

조항노 이사 : 본 안건 차량운반구 용도 폐기 및 매입 심의에 동의하다.

김 영 이사 : 조항노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의 장 : 조항노 이사의 동의와 김 영 이사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로 의결하도록 요청하자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을 하다.(의장1명, 이사4명) 본 안건에 대하여 확정·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 용도 폐기 차량운반구 내역(단위:원)

차량명	차량번호	연식	운행거리	취득일지	취득금액	매각금액	제조사	비고
에쿠스	25도6589	2011년	257,500km	2011.03.17.	90,415,620	3,000,000	현대자동차	
포터II	95버8348	2005년	83,000km	2005.04.15.	13,155,780	750,000	현대자동차	

■ 신규 매입 차량운반구 내역(단위:원)

구입차종	모델/규격	취득금액	운행거리	구입처(제조사)	비고
EQ900	3.3터보/프레스티지	46,507,825	44,801km	하나모터스	중고
봉고III	초장축/디젤오토	21,133,620	0km	기아자동차	신차

마. 기부금 수입 심의

의 장 : 다섯 번째 안건으로 외부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기부금 중 기부자의 목적에 맞게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수입처리 심의를 요구하다.

조항노 이사 : 외부기관과 개인에게 기부받은 목적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부금 수입 처리에 동의하다.

김준태 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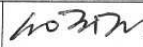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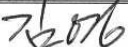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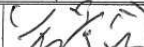

의 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조항노 이사의 동의 및 김준태 이사의 재청에 의거 다른 의견을 묻은 바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전과 동일하게 거수로 의결을 진행하다.(의장1명, 이사4명 전원이 거수하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 없이 전원 찬성하여 확정·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 기부금 수입 내역

[단위: 원]

구분	용도	기부금액	기부일자	회계구분
1	장학금	8,830,000	2023.04.03.	교비(비등록금회계)
2	장학금	1,000,000	2023.04.29	교비(비등록금회계)
3	장학금	250,000	2023.07.18.	교비(비등록금회계)
4	장학금	500,000	2023.07.03.	교비(비등록금회계)
5	장학금	1,000,000	2023.06.13.	교비(비등록금회계)
6	장학금	500,000	2023.03.10.	교비(비등록금회계)
7	장학금	500,000	2023.03.31.	교비(비등록금회계)
8	장학금	1,000,000	2023.07.31.	교비(비등록금회계)
9	장학금	100,000	2023.04.07	교비(비등록금회계)
10	장학금	500,000	2023.04.07.	교비(비등록금회계)
11	장학금	360,000	2023.04.06.	교비(비등록금회계)
계	11건	14,540,000		

[간서명란]

이사장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조항노	이사		김사		김사	

의 장 : 오늘 회의 안건은 모두 심의·확정 되었으며 다른 기타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폐회
코자 하오니 동의 재청해 주실 것을 요청하다.

김 영 이사 : 폐회 동의를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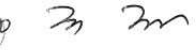
김경희 이사 : 재청하다.


의 장 : 폐회 동의 및 재청이 있으므로 2023학년도 제2차 법인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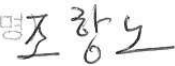
위와 같이 의결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사실을
확인함.


2023. 9. 1.


학교법인 순천성심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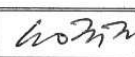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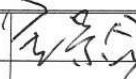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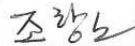
이 사 장 성 규 제 (서명) 

이 사 김 경 회 (서명) 

이 사 조 향 노 (서명) 

이 사 김 준 태 (서명) 

이 사 김 영 (서명) 

[간서명란]							
이사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감 사	